

일본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대책^①

일본에서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은 그 역사가 짧음으로써 규칙의 확립이나 법적인 정비, 지도자의 인재육성, 조정조직의 확립 등이 늦어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인구의 증가에 따른 어업이나 지역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 수산청은 마리나,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보드 세일링, 직판(直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정 △해양성 레크리에이션과 어업과 조화를 이루는 본연의 모습 △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정비 운영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감안,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연안역의 다면적 이용 대책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부설 어항어촌개발연구소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대책지침의 기본적 관점

연안어업과 해양레크 공존의 관점 일본의 수산업은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선(地先)어업을 영위하는 권리로서 면허되는 공동어업권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산동식물 재생산의 장소인 연안어장을 유지, 보전하여 왔다.

또 그 어구나 어기, 어장,

어획대상 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법적 혹은 자주적인 규제나 제한이 있었다.

요컨대 일본의 연안어업자는 어업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통해서 어장에 대한 '조업하는 권리'의 행사뿐 아니라 동시에 '조업하지 않는 의무'를 통해서도 일본의 연안어장이나 자원을 보호해 온 것이다.

더욱이 각지의 어촌에서 이 어겨온 봄, 가을의 '해변가 청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안환경보전이나 어업

자들에 의한 수많은 인명구조의 역사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연안어장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급속히 늘어나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은 육지에서의 등산이나 캠프 등과 비교할 때 그 규칙의 확립이나 법 제도적인 조건정비, 지역적 대응, 인재육성, 조정조직의 확립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어업자에 의한 조업이나 수산

자원조건이 악화되어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자연적, 사회적 기반 그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대책지침 작성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어업은 긴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면서도 적극적인 어획노력과 함께 자주적 법적인 규제, 제한 등에 의하여 일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수산물 공급과 아울러 어장 해양환경의 보전, 어업자의 취업의 장 확보와 생활환경의 유지, 나아가서는 일본고유의 어식(魚食)문화의 육성, 계승하여 왔다.

요컨대 일본의 전통적인 어업질서란 본질적으로는 연안 근해에 있어서의 어업생산력을 '단기적으로 억제'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호' 한다는 것이고, 수산자원보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단기적으로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용' 한다는 것이었다. 언뜻보기에 이 모순된 관계야말로 일본의 연안 근해어업의 역사와 일본형 어식문화를 지탱해온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고, 구미(歐美)에 있어서의 연안 해양이용 질서와

기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날 수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자원관리형어업'도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단기적인 보호'와 '장기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 대응형 어업의 미래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안어장에 유어(遊漁)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 대량으로 무질서하게 들어갈 경우 직접적으로 어업생산이나 수산물 공급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활환경이나 사회질서 그 자체의 존립도 위협받게 된다.

한편, 해면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근래 급증해온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수요는 일정한 규칙이 전제로 되는 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국민적 요망이고,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무원칙적인 배제의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음도 명백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연안어업이나 어촌도 종래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 존립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도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형의 모방이 아닌 일본독자의, 즉 일본의 실정에 잘 맞는 '자원관리형 어업'과 공존할 수 있는

'자원보존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육성함으로써 열려있고, 활력 있는 어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업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조직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보존형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존산업으로서 연안어업과의 공존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도 레크리에이션 행위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억제'와 '장기적인 육성'이라는 구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육성을 위한 어업 어촌의 역할

앞에서는 일본 연안어업의 역사적 경과를 통해서 일본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일본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육성에 따른 어업과 어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 연안해역에 있어서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혹은 해양리조트의 역사를 보면, 명치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최초의 해수욕장이 명치18년(1888년) 의사 마츠모토 준(松本 順)에

개설된 오오이소(大磯=神奈川縣 중남부에 있는 別莊地 어업의 거리)에 개설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결국 해수욕장은 시민이나 군인의 건강유지의 장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해변의 소나무 숲 등에 많은 병원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를테면 바다풍속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건강 회복에 일정한 효과를 지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 이후 쇼난(湘南=神奈川縣 중부)해안 뿐만 아니라 보소오(房總)반도나 이즈(伊豆)반도에도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예술가나 학자들의 별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문화인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이나 그 경관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지방어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화 예술활동을 해왔다.

이와 같은 일본의 예술적인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라기보다는 해양성 리조트의 모습을 보면 도시인과 어촌사람들과의 교류라는 것뿐만 아니고, 어촌사람들은 대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서 바다라고 하는 대자연의 혜택이나 위협을 도시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해양성 레크

리에이션이나 해양 리조트의 원형은 이미 긴 역사를 지닌 것으로서 근래에 와서 구미에서 돌연히 수입한 것도 아니고, 리조트법에 의하여 생겨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일본형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문제는 용궁(龍宮)신앙으로 대표되는 '바다에 사는' 조상신 신앙일 것이다. 예컨대 우란 분재나 피안(彼岸=불교행사), 징월 등의 행사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전국적으로 그 풍속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리하여 긴 세월동안 어업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연안지역 사람들의 생계는 바다와 함께 형성,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안지역의 역사와 생계에 있어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 전통적인 어촌질서를 무시하고 대량 참가하는 일은 연안의 지역사회와 생활의 방위라는 입장에서조차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고기는 살토막으로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다라는 대자연 속에서 협동하여 살아온 어촌이나 어업자의 역사와 현실을 가르치는 일은 학교교육에서는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해양생활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 역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직하다.

그러므로 진짜 바다살림살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입되어 어촌활성화에 본질적인 일조를 하는 일은 이미 개관한 일본어촌의 역사에서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진흥과 어업재편의 과제

지금 일본의 국민경제는 제3차 산업화와 서비스 경제화의 큰 흐름 속에 있고 연안어업도 관계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연안 어촌지역은 「해양레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양레크 대응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락적(短絡的)이다.

이러한 외압에 대하여 어업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업의 현실에서 어떤방법으로 어업의 전망과 함께 해양레크에 대한 전망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재생하는 연안어업과 공존할 수 있는 해양레크의 방향

근래 연안어업의 생산력은 증가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것은 해양질서 재편성에 의한 원양어업의 붕괴나 정어리 어획의 급락으로 인한 근해어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연안

어업 양식어업의 지위가 부상하는 동시에 연안어획물의 선도 품질감, 산지감각이 재평가되고, 물류시스템의 발달과 소비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그 부가가치 향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1).

발전하는 연안어업 가운데서도 특히 자망(10톤미만층), 정치망, 선인망 패치망, 양식업 등 연안해역에 있어서 어구나 시설의 설치에 따라 희소한 해변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종류가 모두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1).

또 근래의 활어수요에 대응하여 정온한 연안역에는 많은 축양시설의 설치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발전하는 연안어업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있으나 이들에 대표되는 연안어업종은 어기, 어장, 어구, 시설, 번식이나 성육 등의 환경이 최적상태에서 보전 관리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해양스포츠, 해양레크 등의 전개도 이러한 연안어업의 발전과 조화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지역어업 어촌을 핵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해양레크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외부불경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관점

각 어업지역에서는 해상항행에 의한 문제, 조업피해, 자원파괴 등의 문제를 계기로 해양레크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많고, 단순히 연안역 이용을 둘러싼 어업자와 비어업자와의 조정문제(즉 당사자끼리의 문제)로서 해소될 수 없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해양레크 활동도 완전히 자유롭고, 무제한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해변이용을 꾀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침이나 대책의 제시라는 과제로 생각하면 먼저 한정된 연안환경 자원이나 국토의 보전 관리를 전제로한 해양레크 지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양레크개발에 의하여 국토나 지역환경의 파괴라는 '외부 불경제'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가 요구된다. 즉,

① 연안역의 개변(改變)을 수반하는 마리나 등의 개발을 최소한으로 할 것

② 마리나 개발 등에 있어서는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총량 규제'를 고려할 것

③ 자연자원이나 경관 조망은 최대한 보호될 것

④ 예상되는 재해 피해의 예방대책이나 구조체제가 정비될 것

⑤ '자원관리형 어업'과의 조화가 확보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배어업과 연계한 자원관리형 어업과 관련하여 말하면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을 지향하는 지역어업시스템, 지역영여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어업과 조화적인 해양레크개발의 구조가 유도되어야 한다.

어업 어촌경제재편 및 활성화의 관점

오늘날의 어가 경제와 어촌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어가는 가족협업체로서 가정의 실태를 잃어 가는 것이 많아지고, 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촌락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연안어업이 시장이나 소비 대응형의 어업경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각 어촌지역은 각각 개성적인 방향으로 외부를 향해서 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장래 지역어업의 방향을 고려할 경우 어촌지역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이 사실이

다

① 어업형태... 연안어업 양식업의 상대적 지위향상, 고부가가치형 어업으로 재편, 고령화의 진행, 원맨(One man)조업의 확대, 종묘방류로 인한 자원의 증가, 해양레크 대응형 어업활동의 침투 등

② 자원이용... 소량 다품목형 자원이용의 확대, 이용규제의 강화에 의한 자원관리 보전활동의 추진 등

③ 산지유통... 소비자시장으로 접근하는 물류기술과 유통변화의 진전, 지역내 유통이나 바이패스유통의 확대, 공판체제의 재편강화의 진전, 협동조합간 제휴의 발전 등

④ 어민의식... 전통적 어업 어촌관과 어협귀속의식의 변화,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 어업관 생활관의 침투 등

⑤ 어협... 조직 경영합리화의 추진, 사업의 다각화와 경영주의적 패턴 등

이와 같은 어업 어촌의 변화는 국민경제의 제3차 산업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른바 해양레크와도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업 어촌 어협 등이 이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 다시 해양레크의 전개를 기대할 때의 공통 과제는 명백하다.

즉, 지역어업과 어업자가 직

면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 극복에 있어서 해양레크의 전개가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해양레크에 대한 어업자의 합의형성과 깊이 관계되고 있는 것도 명백하다.

즉, 해양레크의 전개를 어업 어촌의 경제재편 및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장조건 개선의 개발이나 판로개척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시장의 한계성 안에 있는 수산물의 판로확대, 시장확대의 과제는 생산자나 계통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되어 있다. 어업자에 의한 어획물의 품질이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 가운데서 해양레크에 의한 수요 등 시장확대의 방향책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해양레크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나) 어가의 취업조건이나 취업기회의 확보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지역의 취업조건이나 변화와 어업소득의 불안한 조짐으로 인한 어가의 다취업화의 방향은 오늘날의 억제적인 어장이용(관리형 어업) 추진과 함께 어가 경제의 기본적 성격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어업의 독자성을 살린 다양한 취업기회의 창출에 해양레크가 어떻게 이바

지할 수 있을까가 문제되고 있다.

다) 어가 세대원의 고령화나 고령자 복지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지역에 따라서는 기간적 어업종사자의 고령화 대책에 공헌할 수 있는 해양레크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마리나나 관련시설의 개발이 고령자에게 경험을 살린 취업선을 제공하거나 고령자의 조업이 가능한 어업의 제공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

라) 어업의 서비스화나 상이한 업종교류에 의한 지역어업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지역어업 발전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식량공급 산업으로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업 관광레크 스포츠 외식 산업 호텔 여관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산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안어업자는 연안지역 해양레크의 전개에 있어서 지역 특성이나 어업자로서의 경험을 살리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의 중핵적인 역할을 더욱더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해 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어협과 마리나 피셔리너 대응지침

어협과 마리나 피셔리너 대응의 기본지침

이미 각지의 어촌에 있어서 조업질서의 확보나 어촌의 활성화, 비저터 정(艇)이나 불법계류정(艇)의 처리, 마리나 피셔리너 개발에 대한 반대 등의 여러 관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마리나 피셔리너에 대한 대응이 행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협 등이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마리나 피셔리너에 대해 대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1)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대응에 관한 비결이나 인재의 육성이 늦어지고 있고, 계통전체로서도 이러한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축적이 적다.

2) 마리나 피셔리너 등의 정비에는 일반적으로 거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어협의 자금규모에서 곤란한 점이 많다.

3) 그 때문에 민간자본의 도입이나 제3섹터의 참가 등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어협 어가경영과의 관계나 수면이용 조정, 조업의 안전확보 등에 관한 비결의 축적이 적

다.

4) 한편 요트나 보트의 소유자 측에 어업 어촌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 또 그 조직화의 수준이나 예절상의 문제도 눈에 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또 어항에 있어서 어선 이외의 선박 이용에 대해서는 1994년 9월 21일자로 도도부현지사 앞으로 수산청장관 통첩이 나와 있다.

전체대책

·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시설의 계획에 있어서는 어협이 경영 또는 참가하는 의미를 어협 어가 경영이나 지역사회복지의 장기계획안에 명확히 자리 매김하고 지역에 정보를 공개하면서 계획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선진지시찰이나 어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가도 요망된다.

·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당해지역의 여러 특성을 살린 경영형태, 자금계획, 시설내용, 해면이용규정(이용조정) 등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참가에 대하여는 어협 경영만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어가 경영에 대한 기여나 어가 사이

에 계층분해를 야기하지 않는 배려가 요구된다.

· 지역의 실정에서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참가가 곤란한 경우일지라도 그 영향은 조업이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관련기업이나 기관과의 사이에 해면이용이나 조업안전, 사고대책 등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시설계획

· 시설의 계획에 있어서는 만(灣)이나 여울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각 어항이나 집락(集落)의 장기적인 기능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기의 특색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적, 장기적인 구상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어련(縣漁連)은 물론 국가 현 시정촌의 적극적인 지도 지원이 요청된다.

· 또 시설의 계획에 있어서는 특히 어항장기계획과의 적합성이나 집락환경정비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주민의 생산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조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 기존의 어항에 있어서는 해양레크 관련 선정(船艇)과 어선의 이용조정이 곤란하고 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항이용 조정사업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마리나 피셔리너나 관련시설의 정비와 함께 집락의 생활환경정비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의 액세스(access)도로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집락도로나 식수, 집락배수시설, 용지(공공적 시설), 방재안전시설 등이 정비될 수 있는 어업집락 환경정비사업 등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자금계획에 있어서는 공공사업에 의한 지원이나 NTT주식매각자금 무이자대부제도 등의 활용, 혹은 민간자본의 도입에 있어서는 어협이나 지역사회의 자립성이 보증되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 마리나 피셔리너나 관련시설이 수산자원이나 어업생산,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면서 시설의 입지나 규모,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당해지역의 해역 생산조건이나 사회환경조건 등에서 레크리에이션 관련 선정(船艇)이나 그 활동량에 대한 총량규제나 비지터 정(艇)의 취급에 대하여도 마리나 피셔리너 이용규정을 작성하여 그 운용에 대

해서 이용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운영

· 일반적으로 선정(船艇)의 상가(上架) 등 고정수입만으로는 마리나 피셔리너 경영은 쉽지 않다. 성공 예는 어항수면이나 인접수면, 천연의 만(灣)을 이용하는 등 시설설비에 투자규모가 크지않는 것에 많다. 따라서 기존수면의 유효이용과 함께 공공사업의 지원에 의한 시설투자의 감소나 지역의 자립성이 보장되는 민간자본의 적절한 도입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이나 참가에 대하여는 자본적으로 단위 어협의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어협의 협동 또는 만(灣)이나 여울을 공유하는 어협의 연합체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도 현어련(縣漁連)이나 행정 등의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설내용이나 운영,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용률의 향상이나 어업에 대한 이해의 촉진을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비지터정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의 취급에 대하여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이용률의 향상이나 장기체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마리나 피셔리너만이 아니라 숙박시설 등의 관련시설 등을 특색있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그 지방 특산물을 활용한 토산물이나 요리의 연구, 자연환경의 보전이 요구된다. 이 경우 음식, 숙박 등에 대하여는 지역내의 기존업자들과의 협조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시설이나 이벤트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이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이나 지도자 등에 대하여 조합직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적절한 인재의 초청도 검토되어야 한다.

조정조직

· 마리나 피셔리너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고방지나 안전확보에 있어서도 요트 보트와 함께 오너조직 형성이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보안부, 기업과도 제휴 협력을 도모하면서 조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요트 보트의 행동범위는 단위 어협의 어업권이나 조업구역을 훨씬 넘어서 광역적으로 전개된다. 그 때문에 항상 선정(船艇)의 항행이나 어선의 조업안전의 확보를 위한 광역적인 규제나 정보교환의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